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행행위 정보 및 자살유발정보의 유통금지〉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82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01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행행위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3
2. 자살유발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44조의7)	9

I. 제안경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782호)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3.

다. 회 부 일 : 2025. 1. 2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801호)

가.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24.

다. 회 부 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782호)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07801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Ⅲ. 검토의견

1. 사행행위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제44조의7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4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제44조의7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한 자</u>
4. ~ 7. (생략) ②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¹⁾²⁾.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하고,
 - ‘불법사행산업’을 ① 각 사행산업의 근거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②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산업·사행행위영업 외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³⁾.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 제1호).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원에 달하며⁴⁾,

불법 사행행위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는 2022년 53,177건, 2023년 55,610건, 2024년 85,500건으로 증가 추세임.

<불법 사행행위 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시정요구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53,183	53,177	55,623	55,610	85,516	85,500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사행행위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률 간 중복·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불법 사행행위 정보 유통에 대한 개별법상 처벌규정 예시>

법률	금지 행위	처벌
형 법 ⁵⁾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 ⁶⁾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복표발매를 중개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4) ‘사감위,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5.1.20.

법률	금지 행위	처벌
국민체육진흥법 ⁷⁾	- 체육진흥투표권 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경륜·경정법 ⁹⁾	-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 투표권 ¹⁰⁾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동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인터넷 도박 사이트 또한 도박을 하는 ‘공간’에 포함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함(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도5282 등)

7)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성행 등 도박정보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도박 문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정보 유통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어, 개정안과 「형법」의 처벌 수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불법 사행행위 정보 유통은 「형법」상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여 현행 「형법」

-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 9)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자살유발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44조의7)

가. 개정안 요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¹¹⁾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7. ~ 9. (현행과 같음) ② -----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현행	개정안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 ----- ----- ----- -----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2023년 대한민국의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7.3명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또한, 최근 자살 실행 영상이 실시간 중계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¹²⁾에

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¹³⁾.

○ 다만, 자살유발정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이미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개정 실익이 낮을 수 있음.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⁴⁾,
 - 「형법」 제252조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⁵⁾.
- 이에 따라 현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등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시정요구 현황>

2022년		2023년		2024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1,333	1,046	477	466	486	446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971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 문제를 고려하여 자살유발정보가 불법정보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14)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가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포섭되어 별도의 호 신설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자살범죄의 중대성 및 국민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범죄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정보 규정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